

## 수입식품 검사 현황 및 안전성 제고 방안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의 미흡, 전문인력과 전문 검사기관의 부족 등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위생관리제도가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체제로의 변환과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 유용성을 확보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위생행정을 전개하며 식품위생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鄭基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1. 연구배경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품 품질에 대한 개념은 영양, 위생적인 측면에서 확대되어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유발되는 잔류물로서 동물약품, 항생제, 호르몬제, 사료, 제초제, 비료, 농약 등의 잔류물이나 수은, 카드뮴, 납 등과 같은 중

금속 잔류물, 방사성물질 잔류물의 유무로 그 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유해물질의 허용량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진 외국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의 재배단계에서부터 제조, 가공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통관시에는 감시, 검사, 관리를 통하여 적합한 식품만 반입시키고 있고, 통관된 수입식품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입후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식품위생법 관리 및 운영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관리, 수집체계,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 인체에 위해한 중금속, 합성보존료, 방사선조사 여부, 유해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각국별 여러 가지 위해정보를 수집,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수입식품 검사정보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가 미약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이 미흡하고, 전문인력과 전문 검사기관이 부족하며, 이와 함께 정보전달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국가로부터의 사전정보 입수나 분석 등이 자체적이기보다는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위생관리체도가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체제로의 변환과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 유용성을 확보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위생행정을 전개하며 식품위생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

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향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의 검사 실적과 문제점, 관련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수입 현황

### 가. 수입신고 금액 및 구성비율

〈표 1〉에는 1997년 수입식품의 신고 금액, 품목별 구성비, 그리고 주요 수출국이 제시되어 있다. 총 신고건수는 153,721건으로 중량은 10,239,857톤에 금액은 69억 4754만 6천달러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품목별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에 포함된 자연산물이 전 수입식품의 52.5%를 차지하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식품산업의 발전에 의한 가공식품류의 수입은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총량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나. 주요 품목별 수입금액 순위

〈표 2〉에는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수입식품의 현황이 수입금액 순위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1997년의 경우 축·수산물을 제외한 전체 수입금액인 52억 2541만달러의 53.8%인 28억 1300만달러를 주요 10개 수입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1996년 대비 1997년에는 대두, 원당, 식용유지류, 주류, 커피원두, 그리고 과채류 음료원액 등의

표 1. 1997년 수입식품의 신고 금액 및 품목별 구성비율

(단위: 건, 톤, 천\$, %)

유형	건 수	중량	금액(비율)	주요 수출국
계	153,721	10,239,857	6,947,546(100.0)	
자연산물	51,616	7,512,821	3,649,582( 52.5)	
•농산물	14,162	6,878,987	1,927,442( 27.7)	미국, 중국, 호주, 인도, 필리핀
•축산물	13,922	299,861	836,216( 12.0)	미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수산물	23,532	333,973	885,924( 12.8)	중국,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가공식품	63,445	2,484,753	2,505,627( 36.1)	미국, 태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식품첨가물	17,271	110,516	349,039( 5.0)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기구 및 용기·포장	21,389	131,766	443,298( 6.4)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표 2. 주요 품목별 수입금액 순위

(단위: 톤, 천\$, %)

순위	품명	수입중량		수입금액		전체금액대비
		1996	1997	1996	1997	
1	대두	1,399,176	1,639,082	447,884	516,427	9.9
2	밀	2,208,219	2,369,293	475,354	406,096	7.8
3	원당	1,067,032	1,232,128	334,635	363,362	6.9
4	옥수수	1,772,784	1,913,361	334,463	301,169	5.8
5	식용유지류	314,769	358,190	231,227	276,690	5.3
6	주류	49,007	58,771	201,046	255,975	4.9
7	커피원두	53,763	68,541	125,504	201,235	3.9
8	유가공품	86,203	91,079	198,301	189,692	3.6
9	과자류	46,927	45,839	135,082	188,648	3.6
10	과채류음료원액	63,369	72,050	105,674	113,480	2.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축산물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우유가 167,686톤에 4억 8238만 8천달러, 돈육이 64,223톤 수입에 2억 3255만 8천달러로 축산물의 품목별 수입중량이나 금액이 주요 농산물의 수입중량과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검역에 대

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3. 검사 현황

#### 가.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표 3〉에는 최근 4년 동안의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1997

표 3.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 실적

(단위: 건, 천\$, %)

구 분	건 수				금 액	전년대비 처리건수 증가율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1994년	104,203	35,399	37,266	31,538	5,017,290	-
1995년	122,022	38,114	44,825	39,083	6,020,208	+17
1996년	139,211	44,921	53,827	40,463	6,607,080	+14
1997년	153,721	101,763	16,589	35,369	6,947,546	+10

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공업(5), 1998.

표 4. 검사기관별 수입식품 검사 실적(1997년)

(단위: 건)

기관별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계	153,721	152,642	1,079	101,620	143	16,341	248	34,681	688
보건복지부	116,267	115,500	767	92,021	107	1,898	158	21,590	502
농 립 부	13,922	13,868	54	0	23	8,844	8	5,024	23
해양수산부	23,532	23,274	258	9,608	13	5,599	82	8,067	163

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공업(5), 1998.

년 전체 검사건수에 대한 검사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서류검사가 101,763건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관능검사가 16,589건으로 전체의 10.8%, 그리고 정밀검사가 35,369건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검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전년대비 처리건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검사시 시간과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정밀검사의 비율도 1996년 대비 1997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3%내외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비율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밀검사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 나. 검사기관별 검사실적

〈표 4〉에는 검사기관별 수입식품의 검사실적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검사체계는 농·축산물은 농림부에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그 외 수입식품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다. 1997년말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총 153,721건 중 152,642건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수는 1,079건으로 전체의 0.7%로 나타났

표 5. 검사기관별 부적합 처분 실적

(단위: 건, %, 톤, 천\$)

기관	총처리건수		부적합							
			건수		비율		종량		금액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계	139,211	153,721	1,260	1,079	0.91	0.70	10,858	7,527	23,817	16,111
보건복지부	106,682	116,267	762	767	0.71	0.66	4,321	4,199	7,616	6,514
농림부	11,758	13,922	25	54	0.21	0.39	237	966	547	3,252
해양수산부	20,771	23,532	473	258	2.27	1.10	6,300	2,362	15,654	6,345

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공업(5), 1998.

표 6. 국가별 부적합 처분 실적

(단위: 건, 천\$, %)

구분	수입신고 실적		부적합		전체 부적합 건수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31,837	1,771,353	292(0.92)	2,073(0.12)	38.1
중국	14,660	389,046	116(0.79)	1,609(0.41)	15.1
일본	19,524	390,039	60(0.31)	395(0.10)	7.8
이탈리아	2,720	60,636	51(1.88)	61(0.10)	6.6
소계	68,741	2,611,074	519(0.76)	4,138(0.16)	67.7
전체	116,267	5,225,406	767(0.66)	6,514(0.12)	

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공업(5), 1998.

다. 이는 미국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로, 미국의 부적합 비율은 각 품목별로도 1.0% 이상<sup>1)</sup>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부적합 처분 실적

<표 5>에는 1996년과 1997년 수입식품의 부적합 처분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수입건수의 0.7%인 1,079건으로, 1611만 1천달러에 대해 부적합 처분이 내려졌다. 가공식품을 검사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1996년 761만 6천달러에서 1997년 651만 4천달러로 부적합 처분이 감소추세를 보였다. 세 검사기관 중 농림부의 부적합률이 전체 평균 0.7%보다도 적은 0.39%를 나타냈으며, 해양수산부의 부적합률은 전체 건수의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에 나타난 국가별 부적합 실적을

1) 1995년 현재 곡물이 1.3%, 어류가 15.8%, 과일이 3.3%, 채소가 3.9%, 그리고 기타가 5.6%임.

살펴보면, 수입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의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나, 기타 다른 나라의 제품도 식품첨가물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라. 유형별 부적합 내용

〈표 7〉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의 유형이 품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자연산물의 경우는 부패, 변질이 주된 부적합 판정 사유였고, 주로 검역소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가공식품은 성분배합기준 및 규격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 미생물기준 초과, 유통기한 초과, 그리고 부패·변질 등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물의 경우는 세균학적 검사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즉, O-157과 같이 변질되면 안되는 세균이 검출된 것이며, 그 외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각종 축산물, 축산물의 부산물 등이 수입되었으며, 대부분 냉동육의 형태로 수입되므로 다른 부적합 유형은 상대적으로 저비율을 보였다. 수산물물은 관능적으로 시식 불가능 판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세균이 검출된 경우가 그 다음이고, 적정 수분함량 및 선도가 미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4. 개선방안

#### 가. 효율적인 검사체계의 수립

수입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검사관리체계가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로 분류되

고, 각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미국의 FDA검사관리체계와 유사하나 미국은 서류검사(식품첨가물에 대한 검사 실시)나 관능검사가 정밀분석검사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가 적부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에 있어서 서류검사를 통해 수입적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검사방법을 찾아내는 효율적인 검사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그 외에 기존 자료의 이용, 검사원의 전문적인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분석결과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서류검사는 전문인이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련 검사제도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검사체계의 부분별 분담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 나. 중앙관리식 전산망 체계의 완전 구축

선진 외국들은 전산망체계로부터 품목별, 국가별 그리고 회사별로 수입식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이러한 전산망체계가 완전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역소검사 중심체제에서 중앙관리식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에 관한 자료를 수

표 7. 수입식품의 부적합 판정 유형

(단위: 건, kg, \$)

부적합 유형		건 수	중 량	금 액
총 계		1,079	7,539,302	16,110,801
검역소	소 계	767	4,198,943	6,513,588
	• 기타규격위반	192	514,447	1,519,578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66	281,718	715,003
	• 미생물(대장균, 세균수)기준 초과	162	1,341,289	2,180,731
	• 일반성분기준	49	322,467	533,325
	• 유통기한초과	43	55,891	110,881
	• 부패·변질	40	534,281	396,107
	• 중금속	30	29,977	123,974
	• 보존료	21	17,820	84,737
	• 착색료	17	30,317	166,471
	• 증발잔류물	17	17,221	88,941
	• 잔류농약기준초과	13	969,683	466,177
	• 이물혼입	9	63,816	39,534
	• 순도시험	5	8,677	83,046
	• 기타	2	11,338	4,935
• 디부칠주석화합물	1	1	148	
축산물	소 계	54	978,359	3,252,213
	• 세균학적 검사	23	406,951	1,077,305
	• 수입금지	21	462,958	1,814,730
	• 부패·변질	4	94,895	336,049
	• 현물검사 부적	2	1,074	10,057
	• 진공포장파손	1	130	379
	• 현물과 검역증 상이	1	11,644	11,644
	• 검역증 미첨부	1	99	2,049
	• 위생조건 위배(서류)	1	608	-
수산물	소 계	258	2,362,000	6,345,000
	• 관능 부적합	81	572,000	1,025,000
	• 세균수	55	536,000	1,503,000
	• 수분	50	213,000	1,042,000
	• VBN(선도)	48	847,000	1,967,000
	• 식중독균	13	161,000	362,000
	• 일산화탄소	4	19,000	145,000
	• 중금속	2	100	100
	• 기타(서류, 타르색소, 대장균군)	5	13,900	300,900

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공업(5), 1998.

집,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분석도 전문성이 있는 분석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인력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각 검역소나 식품의약품지방청에서 입력된 모든 자료는 중앙본부로 보내져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처리되어 보관되며, 검역소나 지방청에서는 이 처리된 종합자료에 의해 수입식품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역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려면 제품들에 대한 부호의 통일과 여기에 필요한 모든 항목의 부호를 부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선검사 후통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선검사 후통관제도를 모든 수입품목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신속한 검사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를 보면, 수입식품 검사관리체계처럼 수입시에 실제로 검사를 강화하지 않고도 사전에 수출국의 공장등록제도를 활용하거나, 수출국에 검역관을 파견하며, 국가간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식품의 수입수속을 간소화 및 신속화로 선검사 후통관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관련제도의 도입으로 선검사 후통관제도를 실시해야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수입전 관리제도

#### 1) 검역관 파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 수출국에 원료생산에서부터 가공단계까지 각 제조공정을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검역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만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수입검사에 따른 모든 부담을 해당 수출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안성산 배와 제주 감귤을 수입할 때 생산현지에 검역관을 파견하고, 생산단계에서 저장, 선적, 운송단계까지 검역관 파견에 대한 비용 일체와 심지어 해당 제품의 검역비용까지 한국측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검역후 미국 검역소 검사없이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같은 미국의 수입제도 관행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이 상호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본다. 또한 수출국내에서의 철저한 사전검사는 국내 통관시 관련 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수입국의 검사기관 인정

전세계가 자유무역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는 각국이 마찬가지로 폭주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 검사기관의 능력 및 자질을 심사하여 지정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후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가 첨부된 수입식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내 통관시 국내검사를 검사성적서로 대체해 면제하면 검사업무량을 줄일 수 있으며, 수입식품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상대 수출국의 공장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양국간의 협상에 의하여 정보를 교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 검사정보의 중앙관리화를 통해 통일된 자료를 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 3) 국가간 상호인증제도 실시

국가간 특정품목에 대하여 최근 2~3년간 수입검사성적에 따라 특정 식품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는 국가간 상호인증제도의 실시도 수입식품관련 검사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 마. 통관시 검사제도

##### 1) 검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최근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인공성장호르몬제나 유전공학 차원의 약물처리 쇠고기, 우유, 토마토 등의 소비와 수입을 막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육류 및 유제품은 이 점에 관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조사식품의 품목확대조치도 안전성이 확보된 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분석을 담당하는 검사원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담당행정 공무원의 전문성도 아울러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수시로 관련 공무원의 자리이동으로 정책을 제대로 확립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간의 교역이나 안전성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 능력이나 협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런 방면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위해성분중점검사제도 도입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위해성분중점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검역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선진국처럼 문제제품이나 정보취약 상품만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 수입식품에 관련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등 관련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전자문서교환체계를 구축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위해성분중점검사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농산물의 경우 독성 및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등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일임하고 중금속, 보존료, 유해미생물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해성분중점검사제도’는 사전수집된 정보에 의해 위험도가 높은 수입식품 중심으로 정밀검사대상은 축소하되 첨단장비와 전문 검사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적발률을 제고하는 등 문제

발생 사례가 있는 제품과 정보가 취약한 제품을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3) 사전신고제 정착

수입식품의 신고가 물품도착 및 보세창고 장치후에 이루어짐으로써 물품의 통관기간 지연 및 식품의 안전성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화물도착 전에 사전신고를 받아 우선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화물 도착 후에 관능검사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도가 정착화되어야 할 것이다.

### 4) 검사의 주안점 설정 및 관리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은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의 주요내용은 성상, 회분, 보존료, 산가, 과산화물가,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중금속, 증백제, 세균, 대장균, 산도 등이며 그 외의 항목은 필요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 품목별로 검사항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각 제품별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검사항목이 정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낮은 수

준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검사의 주안점은 제품의 표시사항과 위생안전성 및 신뢰성에 두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생산품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더 많은 검사항목을 검사할 수도 있기는 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로 전산망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이용, 검사항목을 감소시키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식육의 경우 살모넬라, 잔류물질이 대상이 되고 식육제품은 대장균, 아초산균, 소르빈산, 수분활성도, 착색료 등을, 크립류의 경우 산도, 세균수, 대장균 등이 주 검사항목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품목당 검사수가 적은 편이다.

이상과 같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일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고, 새로이 도입·정착시켜야 할 제도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각종 제도의 도입과 정착뿐만 아니라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자세라 하겠다. 